

전자공증제도에 관하여

전 병 서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 · 변호사

I. 시작하며

지금까지 공증인이 종이문서를 전제로 행한 “사서증서를 인증한다.”, “회사설립시에 필요한 정관을 인증한다.”, “문서에 확정일부를 부여한다.” 등과 같은 공증업무를 고도의 정보통신사회에 있어서 IT 기술의 발전,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새롭게 전자문서(電磁的 기록)에 대해서까지 이를 확대하는 전자공증제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¹⁾

또한 대상에 있어서 전자문서(電磁的 기록)에 대한 공증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증행위 자체가 전적으로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의 공증의 문 제도 앞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 전자인증 · 전자공증의 의미

전자거래에 관한 제도적 기반으로 전자서명이나 전자인증은 주로 정보의 작성자를 확인하는 것인 데 대하여, 전자공증은 정보내용의 변조나 소실(消失)에 대비하여 정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공 증은 전자서명과 전자인증만으로는 전송 도중에 발생하는 정보의 소실(消失) 등에 대응할

1) 본 글은 필자가 연구 수행한 법무부의 2008년도 “각국의 공증법제 비교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 데,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법무부의 공식 의견은 아님을 밝힌다.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게 작성된 정보에 관한 기록을 보관시키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에 따라 정보의 존재나 내용이 증명되어 분쟁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²⁾

그런데 이러한 증명사항에 대한 행위를 어떠한 주체에게 맡길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① 우선 기술적 신뢰성이 있을 것, ② 나아가 사회적 신뢰성이 있을 것(기술적으로 뛰어나도 그것만으로 제3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그리고 간이성 내지는 편리성이 있을 것, ④ 비용이 적정할 것 등을 시점(視點)에 넣어야 할 것이다.

현행 공증제도 하에서, 공증은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기하여 공적인 기관이 사인의 법률생활에 관하여 생기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하고, 공증사무의 하나인 인증은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마찬가지로 공적인 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이러한 공증사무의 담당자로 공증인제도를 설치하고 공증사무를 하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공증인법 제2조).

한편, 민간기업이 스스로 수집한 정보와 전자인증기술의 개발에 기하여 거래행위의 당사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해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전자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³⁾ 이러한 민간기업이 행하는 증명사무행위에까지 인증이라는 용어를 끌어쓰는 것은 단지 용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적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증명사무라는 인상을 제3자에게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다만, 민간기업의 이러한 역할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Ⅲ. 전자공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독일

(1) 의의

2) 이호용, “일본의 전자공증관련 법제동향”, 인터넷법률(2001. 5), 196면.

3) 전자인증은 전자거래나 전자신청에 있어서 거래 또는 신청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으로 전자거래 또는 전자신청에 관계되는 전자정보의 작성자가 그 특정된 본인(本人)인가를 증명권한을 가진 기관(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사법소통법(司法疏通法; Justiz-kommunikationsgesetz; 이하 줄여서 JKomG)을⁴⁾ 통하여 공증제도에 전자서명 등을 이용한 전자공증이 도입되었다. 즉, 독일에서의 전자공증의 출발은 사법소통법(JKomG)에 의하여, 개정된 증서작성법(Beurkundungsgesetz; 이하 줄여서 BeurG) 제39a조, 제42조제4항 및 연방공증인법(Bundesnotarordnung; 이하 줄여서 BNotO) 제15조제3항에 근거한다.

사법소통법(JKomG)은 종이에 한정된 서면 방식을 대신한 전자거래의 이용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또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ZPO) 등에서도⁵⁾ 전자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⁶⁾ 평가할 수 있다. 사법소통법(JKomG)의 제정 전부터 이미 민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⁷⁾ 나아가 위 사법소통법에 의하여 절차법에서도 독일의 입법자들은 전자거래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의 구축을 시도한 셈이다.

(2) 내용

종래 서면 또는 구술 형태 이외에 전자적 형태도 이제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용될 수 있게 되었고,⁸⁾ 전자적 문서는 종이 형식과 마찬가지로의 등가물로 취급되면서, 증서작

4) BGBl. 2005 I, S. 837. 사법부에서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통신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사법소통법이 시행되었다.

5) Zivilprozessordnung(Art. 1 JKomG).

6) 독일 민사소송법(ZPO)에서도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법원이나 당사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서명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0a조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면은,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 전자문서로서의 기록물로 충분하며, 제출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제130b조에서는 법원의 문서도 법관 등에게 자필서명을 요구할 때에 문서의 말미에 이름을 붙이고, 그 문서에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전자문서로서의 기록물로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때에 사본은 필요 없다는 것이며(제133조), 소송상 조서도 전자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제298a조), 판결의 정본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된 전자문서로 행하여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7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전자사문서나 전자공문서의 증거력은 사문서나 공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1a조).

7) 독일에서도 계약체결상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계약 등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가 반드시 서면으로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에서 서면을 요구할 때에, 독일 민법전(BGB) 제126조는, 그 서면은 그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전자적인 형식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26a조에서는 전자적인 형식이라는 조문명으로, 법률로 서면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자적인 형식으로 대체된다면, 의사를 표시하는 자는 전자적 형식에 자신의 이름을 첨부해야 하며, 그 전자적 문서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8) Viefhues, Das Gesetz über die Verwendung elektronischer Kommunikationsformen in der Justiz, NJW 2005, 1009.

성법(BeurkG) 제39a조와 제42조제4항은 전자문서를 증서작성법(BeurkG)에 편입시켰다. 즉, 종이문서에 대하여 행하는 인증에 병행하여 증서작성법(BeurkG) 제39a조는 전자적 인증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종이문서에 대하여 인증할 때에 이루어지는 공증인의 서명과 직인에 대신하여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증서작성법(BeurkG) 제42조제4항에서는 전자문서의 출력물(인쇄물)인 사본의 인증시에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에 관한 조사의 결과가 문서화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공증인의 자필서명을 대체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공증인의 봉인(封印; Siegel)을 대체하는 공증인자격(특성)의 징표만 보장되면, 인증의 범위에서 전자공증문서도 전통적인 서면 형식의 공증문서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06년 4월 1일부터 모든 공증인은 전자공증문서를 작성하거나 전자문서의 사본을 공증할 수 있도록 장치(기자재)를 갖추도록 하였다(연방공증인법 제15조제3항).

1) 증서작성법(BeurkG) 제39a조

증서작성법 제39a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서작성법 제39a조[단순전자증서]

제39조상의 공증서류 기타 증서들은 전자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되는 문서에는 반드시 서명법(Signaturgesetz)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 문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가능한 인증서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그 증서로써 관할 사무소의 공증인자격(Notareigenschaft)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증서에는 발행지와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한다.⁹⁾

증서작성법 제39a조는, 조문의 제목이 “단순전자증서”(einfache elektronische Zeugnisse)로 공증인의 인증업무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관한 단순한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증서는 확인된 내용, 공증인의 서명 및 직인이 포함되고 작성 장소와 일자가 제시되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증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작성될 수 있되,

9) BeurkG § 39a Einfache elektronische Zeugnisse

Beglaubigungen und sonstige Zeugnisse im Sinne des § 39 können elektronisch errichtet werden. Das hierzu erstellte Dokument muss mit einer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Signatur nach dem Signaturgesetz versehen werden. Diese soll auf einem Zertifikat beruhen, das auf Dauer prüfbar ist. Mit dem Zeugnis muss eine Bestätigung der Notareigenschaft durch die zuständige Stelle verbunden werden. Das Zeugnis soll Ort und Tag der Ausstellung angeben.

종이문서로 작성되는 인증서의 경우의 서명(署名)의 역할은 전자인증서의 경우에는 서명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으로, 직인(職印)의 역할은 공증인자격(공증인특성)이 포함된 인증서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셈이다.¹⁰⁾

증서작성법 제39a조에 따라 공증인이 행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범위는 종이문서로 행하는 인증업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제40조 이하의 인증업무에 관한 조항들(서명의 인증에 관한 제40조, 기업의 표시의 인증에 관한 제41조, 사본의 인증에 관한 제42조, 사문서의 작성일시의 인증에 관한 제43조)도 그 성질상 종이로 인증서를 작성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증서작성법 제39a조에 따른 인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증서작성법 (BeurG) 제42조제4항

증서작성법 제42조는 그 조문의 제목처럼 “사본의 인증”(Beglaubigung einer Abschrift)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어떤 서류의 사본을 인증함에 있어서 그 서류가 원본, 정본, 인증사본 혹은 단순한 사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표시를 하게 되는데, 제42조제4항은 공증인의 직무영역에서 전자문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확대된 기술적 가능성을 법에서 수용한 것이다.

증서작성법 제42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서작성법 제42조제4항[사본의 인증]

서명법(Signaturgesetz)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의 출력물(인쇄물)인 사본(Ausdruck)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서명에 관한 조사의 결과가 문서화되어야 한다.¹¹⁾

공증인에게서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문서로부터 이를 변환하여 같은 내용의 종이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며, 이 경우에 증서작성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10) 우리 전자서명법도 그렇지만, 독일 서명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는 요청에 따라 서명키 보유자의 특성이 요건을 갖춘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우리 전자서명법 제15조제2항제8호에서는 요청에 따라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공인인증서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위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특성)을 나타내는 요건을 갖춘 특별인증서가 이용될 수도 있다.

11) BeurG § 42 Beglaubigung einer Abschrift

(4) Bei der Beglaubigung eines Ausdrucks eines elektronischen Dokuments, das mit einer qualifizierten elektronischen Signatur nach dem Signaturgesetz versehen ist, soll das Ergebnis der Signaturprüfung dokumentiert werden.

서 공증인은 서명 부분을 조사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연방공증인법(BNotO) 제15조제3항

연방공증인법 제15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증인법 제15조제3항

위 1항 및 2항과는 달리, 공증인은 증서작성법 제39a조, 제42조제4항의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장치(기자재)를 구비할 수 없는 한에서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인은 늦어도 2006년 4월 1일부터는 제1문에 따른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기자재)를 적어도 1대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¹²⁾

위 조항은 이미 2006년 4월 1일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는 공증인에게 전자공증과 관련 공증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증서작성법 제39a조와 제42조제4항이 정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전자문서로의 공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공증인사무실에 적어도 1대 구비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증인은 공증업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고객은 위 한도에서 공증인에 대한 공증청구권이 부여된 셈이며, 가령 공증이 거부된다면 고객은 당해 공증인사무실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민사재판부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다룰 수 있다(연방공증인법 제15조제2항).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공증인은 서명카드를 필요로 하며, 이는 독일공증인협회(Bundesnotarkammer)의 인증사무소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카드판독기와 특별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Notarnet라는 이름의 유한회사에서는 「SigNota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 전망

증서작성법 제39a조는 종래 공증인이 행하였던 인증업무를 서명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제 다양한 범위의 공증활동이 가

12) BNotO § 15

(3) In Abweichung von Absatz 1 und 2 darf der Notar seine Amtstätigkeit in den Fällen der §§ 39a, 42 Abs. 4 des Beurkundungsgesetzes verweigern, soweit er nicht über die notwendigen technischen Einrichtungen verfügt. Der Notar muss jedoch spätestens ab dem 1. April 2006 über zumindest eine Einrichtung verfügen, die Verfahren nach Satz 1 ermöglicht.

능하도록 된 것이다.¹³⁾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분야는 예를 들어 유한회사(GmbH) 설립등기 등과 같은 상업등기신청(Handelsregisteranmeldung)이다. 전자상업등기에 관한 특별법(Gesetz über elektronische Handelsregister und Genossenschaftsregister sowie das Unternehmensregister; 줄여서 EHUG)¹⁴⁾에 의하여 개정된 독일 상법(HGB) 제12조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상업등기신청은 전자공증문서(elektronisch in öffentlich beglaubigter Form)로만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절차진행은, 제1단계로 지금까지와 같이 종이로 되어 있는 상업등기부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추가적으로 공증인은 통상적인 서명인증표시를 하여 상업등기부신청서에 첨부한다. 2단계로 이러한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결과적으로 전자적으로 인증된 사본을 작성하게 된다.

그 밖의 영역에서 위 증서작성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전자공증이 얼마나 이용될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증활동이 촉탁인의 의사표시를 공증하게 되는 집행증서의 작성 그 자체에도 전자공증이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아예 공증행위가 전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도 앞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공증이라는 절차는 대면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점에서 그 조화점을 찾는 것도 또한 과제이다).

2. 미국

미국 헌법상 공증인법은 각 주의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각 주는 각각 공증인법을 제정하고 있다.¹⁵⁾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증인(Notary 또는 Notary Public)은 주정부에 의해 공정한 증인으로서 공공에 봉사하도록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¹⁶⁾ 각 주마다 공증인이 되기 위해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로 법적 소양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개인이 비

13) Winker/Keidel, Handausgabe des Beurkundungsgesetzes mit Erläuterungen(2008), §39a Rn. 9.

14) BGBl. 2006 I, S. 2553.

15) 미국에서 초기의 공증인은 각 주에서 선거하거나 임명하였고 그들의 임무는 사법적인 성질보다는 사무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 후, 고도의 인격을 갖춘 공적 인물이 필요하게 되자, 미국 헌법은 이를 각 주에 일임하였고 각 주는 상업상의 이해관계, 사업상의 필요성과 시민의 관행에 기초하여 공증인법을 제정하였다. 법무부, 『각국의 법무제도(법무자료 제261집)』, 2004, 55~56면.

16) A Notary Public is a public servant appointed by state government to witness the signing of important documents and administer oaths. 출처 : <http://www.nationalnotary.org>.

교적 용이하게 공증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인은 공증인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고, 배경 조사를 위한 몇 개의 서류를 채워 제출하거나 혹은 청렴하다는 것을 보증할 보증을 들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대륙법계의 공증인과 유사한 Civil Law Notary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Alabama주에서는 Civil Law Notary에 관한 입법이 1999년에 성립하여 2001년부터 시행되었고,¹⁷⁾ Florida주도 마찬가지이다.¹⁸⁾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 애리조나, 미네소타, 네바다, 유타, 플로리다, 워싱턴 등의 일부 주에서 전자서명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자적 기록의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¹⁹⁾

한편 1999년에 통일주법위원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줄여서 NCCUSL)에서 채택된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줄여서 UETA)²⁰⁾ 제11조는 서명 또는 기록의 공증, 인증, 검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전자 하에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17) In 1999, Alabama's first civil law notarial statute became law. Since then the law has been extensively revised, and Alabama is believed to have the model code for other states, except Florida, which do not have civil law notarial statutes. (See Alabama Code, § 36-20-50, et seq.) The new statutes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26, 2001. Boyd F. Campbell/Ronald G. Neiworth, CIVIL LAW NOTARIES : SOMETHINGNEWINALABAMA, 64 ALA.LAW, 169(2003).

18) Fla. Stat. § 118.10, Fla; Admin. Code. 1C-18.001 참조.

19) 김상영,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2001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105면 이하 참조. 예를 들어 애리조나 주의 전자공증제도를 살펴보면(Title 41, Chapter 2, Article 3),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전자공증문서는 ① 전자문서, ② 서명자에 의하여 서면에 첨부된 서명이나 표시, ③ 시간과 일시에 대한 소인, ④ 전자공증표, ⑤ 전자공증문서의 중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itle 41-351. Definitions

5. "Electronic document" means any record created, generated, sent, communicated,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means.

7. "Electronic notary public" or "electronic notary" means any person commissioned to perform notarial acts under this article.

Title 41-354. Notarized electronic documents; elements

A. A notarized electronic document consists of the following:

1. A complete electronic document.
2. A signature or mark that is affixed to the document by the signer.
3. A time and date statement that is affixed to the document in a manner that is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4. An electronic notary token that is affixed to the document in a manner that is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state.

B. On completion of the notarized electronic document, any change to any of the elements prescribed in subsection A invalidates the notarized electronic document.

그리고 2000년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국제 및 국내 상거래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줄여서 E-Sign Act)²²⁾ 제101조(유효성에 관한 일반 규정) (g)항은 제정법, 규정 또는 그 밖의 규칙이 서명 또는 기록의 공증, 인증, 검증 을 요구하거나 또는 전자 하에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의 전자서명과 해당 제정법, 규정 또는 규칙이 요구하는 정보를 서명 또는 기록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는 경우에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여 당사전자기록의 공증 등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²³⁾ 이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전자공증사무에 관한 입법이 없더라도, 공증인에 의한 전자공증사무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 법률가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의 정보보호위원회(Information Security Committee)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적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 ‘사이버 공증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라틴계 공증인의 지위와 유사), 국제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여튼 미국의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 주에 따라서는, 디지털 증명을 이용하면 공증을 원하는 사람이 공증인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대면의 필요성을 무시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e비즈니스를 저렴, 신속 그리고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20) 이를 받아들인 주에 대하여는, ARIZ. REV. STAT. ANN. 41-132 (2000); CAL. CIV. CODE § 1633.1 (2000); DEL. CODE § 12A-101 (2000); FLA. STAT. ANN. § 282.70 (2000); IDAHO CODE § 67-2354 (2000); IND. CODE § 26-2-8-101 (2000); IOWA CODE § 554C.201 (2000); KAN. STAT. ANN. § 60-2616 (2000); KY. REV. STAT. ANN. § 369.010 (West); MD. CODE ANN., STATE GOV.T § 8-504 (2000); ME. REV. STAT. ANN. § 3-14-1 (2000); MINN. STAT. ANN. § 325K.01 (2000); NEB. REV. STAT. § 86-1701 (2000); N.C. GEN. STAT. § 66-308(2000); OHIO REV. CODE § 1306.01 (2000); OKLA. STAT. § 15-101 (2000); PA. STAT. § (Act. No. 69) (2000); R.I.GEN. LAWS § 42-131-1 (2000); S.D. CODIFIED LAWS § 53-12-16 (2000); UTAH CODE ANN. § 46-3-102; and VA.CODE ANN. § 59.1-479 (2000)을 참조.

21) SECTION 11 NOTARIZATION AND ACKNOWLEDGMENT.

If a law requires a signature or record to be notarized, acknowledged, verified, or made under oath, the requirement is satisfied if the electronic signature of the person authorized to perform those acts, together with all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by other applicable law, is attach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the signature or record.

22) 106 PUB. L. NO. 229; 114 STAT. 464.

23) SECTION 11 (g) NOTARIZATION AND ACKNOWLEDGMENT

If a statute, regulation, or other rule of law requires a signature or record relating to a transaction in or affecting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be notarized, acknowledged, verified, or made under oath, that requirement is satisfied if the electronic signature of the person authorized to perform those acts, together with all other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by other applicable statute, regulation, or rule of law, is attached to or logically associated with the signature or record.

그 때문에 공증의 안전성, 공고성을 놓치게 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대면성이 전자공증의 과제로 남게 된다.²⁴⁾

3. 일본

(1) 의의

일본에서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을 중심으로 한 통신수단의 변혁을 배경으로 2000년 4월 11일에 성립하고, 4월 19일에 공포된 “상업등기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4월 19일 법률 제40호)에 의하여 공증인법, 민법시행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공증인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가 창설되었다. 즉, 전자사서증서(電子私署證書; 電磁的 기록)의 인증, 전자확정일부의 부여, 정보의 보존 및 내용에 관한 증명 등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그 후 상업등기법의 개정에 의하여 전자정관의 작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02년 4월 1일부터 전자정관의 인증도 실시되고 있다.²⁵⁾

그리고 처음에는 법인만이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04년 3월 1일부터 개인도 민간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전자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²⁶⁾

24)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자공증기준(ELECTRONIC NOTARY STANDARDS)의 예를 보면, 전자공증인이 전자공증을 수행할 때, 당사자와 전자공증인은 전자공증을 실시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대화하고 또 G.S. 10B-3(22)에서 요구되는 문서에 인증할 수 있기 위해 전화,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또는 팩스와 같은 전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대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NCAC 07C. 0403 전자공증을 위한 물리적 실재 조건).

25) 2005년도 정관인증 전체 건수 108만 4282건 가운데 전자정관인증은 5,960건(약 5.7%)이다. 장래 크게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다.

26) 전자공증제도 이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개인을 묻지 않고 누구라도 특정 시점에 있어서 특정한 정보의 존재의 증명이나 증거보전이 안전·확실·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관의 인증시에 있어서 종이의 정관인증의 경우에 필요한 4만 엔의 수입인자가 필요 없다. ③ 인증된 전자문서나 확정일부가 부여된 전자문서를 쓴 비용(1건에 300엔)으로 20년간 안전하게 보전 받을 수 있다. 전자공증사무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전자적 기록의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	11,000엔(원칙)
	정관의 인증	50,000엔
일부정보의 부여	700엔	
전자적 기록의 보존	300엔	
정보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700엔	
동일한 정보의 제공	700엔	1매마다 20엔 가산

한편 공정증서의 전자화(전자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증서)가 활용되고 있으나, 민사집행 절차가 전자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집행증서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 현재 전자공정증서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²⁷⁾

그런데 종전의 공증제도는 공증인 모두가 동일권한을 가지고 공증사무를 하였지만, 전자공증은 공증인 가운데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전자공증에 관한 사무를 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공증인으로 지정하여[이를 지정공증인(指定公證人)이라고 한다],²⁸⁾ 지정공증인만이 공증사무를 행한다(공증인법 제7조의2 참조). 그리고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공증행위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종래의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 권한을 가진 공증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전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이 전자증명서를 발행하여 공증인의 권한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공증인법 제62조의8, 민법시행법 제7조제1항).

(2) 내용

1) 정관의 인증

회사설립시에 작성이 요구되는 정관을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여기에 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지세의 납부가 필요하지 않은 등의 전자화의 이점(利點)이 있다.

2) 전자사서증서(전자적 기록)의 인증

전자사서증서의 인증은, 종래의 종이로 작성된 사서증서의 인증제도를 전자화한 문서에도 인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촉탁인이 법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서명(조문상으로는 “촉탁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27) 대한공증협회는 이미 전자공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가서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시스템 및 자료 등을 수집·연구하고자 2005년 4월 24~27일 3박4일간 일본 동경에 출장하여 일본공증인연합회, 일본법무성 등을 방문하고 실제 공증인 사무소도 3~4군데 들러서 그 실태를 직접 확인·참관하였다고 한다.

28) 지정공증인 일람은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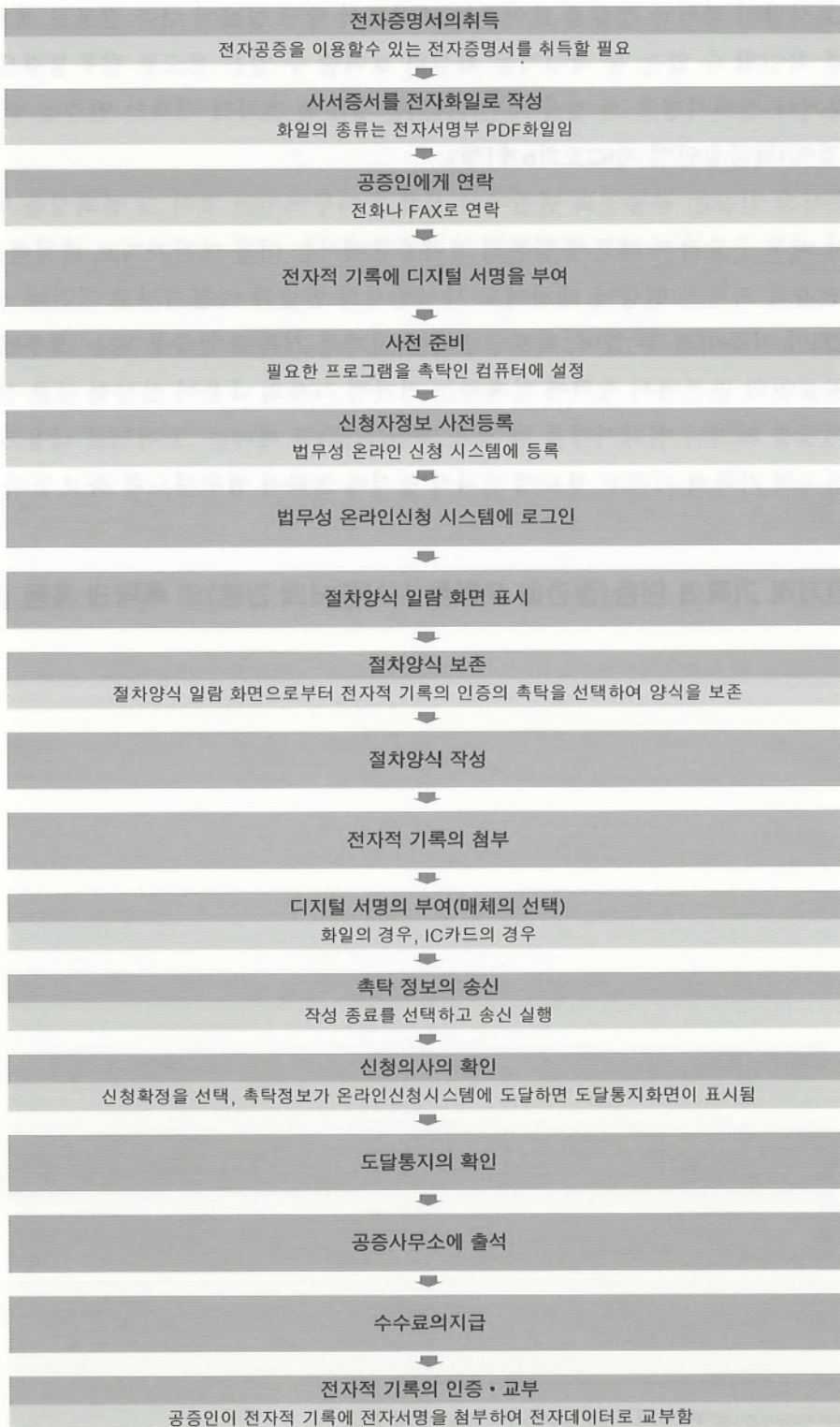
정보가 그 사람이 작성한 것임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로 개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작성자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한 것”)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한 것을 자인(自認)한 경우에 전자적 기록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증인법 제62조의6제1항).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전자공증에서는 이를 마찬가지로 관철하고 있다.

또한 전자적 기록의 인증에 대하여도 사서증서의 인증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선서인증(宣誓認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인증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촉탁에 관계하는 전자적 기록의 내용이 진실한 것을 선서한 뒤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한 것을 자인(自認)한 때에는 그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적 기록의 인증(정관을 포함한 사서증서의 인증)의 촉탁의 흐름]²⁹⁾

29)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index.html> 참조.



3) 확정일부의 부여

전자확정일부의 부여는 민법시행법의 일부개정에 의해 현행의 확정일부의 부여의 제도를 전자화한 것이다. 즉, 지정공증인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일부정보(日附情報)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것이 첨부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 보도록 하고 있다(민법시행법 제5조제2항).

4) 정보의 보존 및 내용에 관한 증명

인증을 받거나 일부정보(日附情報)가 첨부된 전자적 기록의 보존을 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62조의7). 또한 촉탁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공증인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기록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한편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의 청구에 응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전에는 문서의 보존 및 보존된 내용의 증명(등본의 교부)은 선서인증의 경우(공증인법 제58조의2)를 제외하고는 행하여지지 않았으나, 사서증서의 인증 및 확정일부의 부여의 전자화에 있어서는 파손되기 쉬운 점 등 전자적인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후일 그 내용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운영주체

전자공증은 공증인연합회가 운영주체가 되고 있고, 법무대신이 이를 감독한다. 공증인연합회는 전국의 공증인회와 공증인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다만, 운용기술에 대하여는 전부를 공증인 사무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술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전자인증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고, 전자공증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전자인증에 대하여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증명서를 이용하고 있다. 공증사무소가 완결된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온라인 (On Line) 촉탁

2007년 4월 1일부터 온라인 촉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³⁰⁾ 인증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증인 사무소에 나가야 한다. 즉, 신청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일일이 공증인 사무소에

나가야 할 필요는 없고, 법무성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자적 기록의 인증의 촉탁과 동일 정보의 제공의 청구에 대하여는 온라인 신청을 한 뒤, 실제로 공증인 사무소에 나갈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화면표시(전자적 기록의 인증의 촉탁 예)]³¹⁾

新規作成	手続様式を取得し、新しい申請データの作成を行います。
編集	保存した申請データの作成を再開します。
再提出	また、形式チェックでエラーとなった申請データを修正し、提出する場合もこちらから行ってください。
再申請	以前申請した申請データを利用して、新たに申請データの作成を行います。
再申請	修正要求となった申請データを修正し、再度提出を行います。
署名追加	申請データに2人目以降の方が署名を行う場合に利用します。
送信	未送信の手続一覧を表示します。

戻る

IV. 마치며

종래 공증인의 역할은 촉탁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수록된 문서를 직접 공증인이 작성하는 활동, 즉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업무 및 그 밖에 필적 명의인이 직접 서명 등을 하였다는 점이나 사본의 상태를 공증인이 인증하는 활동 등으로 대별되었는데, 이제 전자거래의 발전에 따라 공증인의 업무는 전자공증이라는 새로운 직역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가급적 빨리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사회에 있어서 공증제도의 접근·이용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³²⁾ 특히 2007년 8월 3일부터 상업등기법이 제정되면서, 2008년 4월 1일부터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등기신청시 종이문서형태의 정관이나 의사록 대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이나 법인의사록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현행 종이문서 형태의 정관이나 의사록의 인증에 대응한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그런데 전자공증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전자공증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당사자의 촉탁의 신청 등은 공증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증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에 해당하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촉탁인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면성이라는 기본적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증대상이 종이이든 전자이든, 공증이라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대면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면성에 있어서 그 조화점을 찾는 것도 또한 과제가 되고 있다.³³⁾

이를 전제로, 전자공증제도와 전자인증제도와 체계적 연계성, 촉탁인 및 공증인이 사용 가능한 전자증명 방식,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자공증체계의 설계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0) 종전에는 공증인 사무소에 데이터를 입력한 플로피디스크를 제출하여 촉탁 등을 하였는데, 「指定公証人の行う電磁的記録に関する事務に関する省令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平成19年 法務省令 第7号)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

31) <http://www.moj.go.jp/MINJI/DENSHIKOSHO/denshikoshol-8.pdf> 참조.

32) IT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실태에 흥미를 가지고 최근 일본 학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의외라고 느꼈다고 한다.

[참고] 공증인법 개정안

2008년 11월 28일 현재, 공증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³⁴⁾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안 제5장의2 신설)

- (1)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의 제정(법률 제8582호, 2007년 8월 3일 공포, 2008년 4월 1일 시행)으로 회사 등기의 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을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2)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자공증을 수행할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 등도 보존하도록 함.
- (3)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3) 공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서이다(공증인법 제3조;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정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일본은 이에 해당하는 조문에서 “문서”를 “문서, 전자적 기록”으로 개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한편, 우리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의하여 공증인법에서의 공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도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전자문서를 공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행 공증인법은 전자문서와 같은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증인법에서는 “목도”(目睹), “실험”(實驗) 등의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공증인법 제34조;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그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공증인의 면전”과 같은 규정도 문제이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 공정증서 작성을 제외하고 사서증서의 인증에 있어서도 목도, 실험, 면전 등의 용어에 따른 공증인법상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온라인상으로 실행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제약이 없는 확정일자 부여와 같은 제도는 기술적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현행 공증인법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임상혁 교수의 전자공증 실현에 관한 검토 의견).

3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U0T8H1A1C2Y8A1T8O1G1P1S4D4B4T0 참조.

[조문]**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및 제57조의2제2항·제3항·제5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 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①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